

## 대한민국의 우편 개혁 계획에 관한 양해<sup>1</sup>

이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영국 대표단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우편 서비스를 개혁하기 위하여 진행한 단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대한민국의 우편 개혁 계획에 관한 양해에 명기된 자국의 우편 개혁 계획의 다음 측면에 영국 대표단의 주의를 환기하였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 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대한민국 우정 당국의 신서의 범위는 그 개념의 재정의를 통해 더 명확히 될 것이며, 신서 독점에 대한 예외는 중량, 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확대될 것이다.
- 나.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국내 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그 밖의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 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sup>2</sup>

대한민국과 영국은 대한민국이 자국의 우편 개혁 계획을 위한 위에 언급된 단계를 완수하였음을 인정한다.

---

<sup>1</sup> 이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제14장(분쟁해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up>2</sup> 인용부호 안의 문안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 문안을 이 협정에 포함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자국의 우편제도 개혁을 위한 신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